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9-92 |
|----------|-------|

제출년월일 : 2019. 07.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6. 7. ~ 6. 2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법무팀 검토의견]

| | |
|----------|----------------------------------------------------------------------------------------------------------------------------------------------------|
|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법무팀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공익을 해하는 바가 없음. |
| 특이사항 | 타 자치구 제정 현황 : 13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8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19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 알림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14640(2018.12.12) (국비30%, 시비35%, 구비35%)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다. 비용추계기간 : 2019. 1.~ 지속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19년) | 2차년도 (2020년) | 3차년도 (2021년) | 4차년도 (2022년) | 5차년도 (2023년 이후 계속) | 합계 |
|-------------|----------|-----------------|-----------------|-----------------|-----------------|--------------------------|------------|
| 세입 | 국·시비 보조금 | 5,663,232 | 5,663,232 | 5,663,232 | 5,663,232 | 5,663,232 | 28,316,160 |
| | 구비 보조금 | 3,049,433 | 3,049,433 | 3,049,433 | 3,049,433 | 3,049,433 | 15,247,165 |
| | 소계(a) | 8,712,665 | 8,712,665 | 8,712,665 | 8,712,665 | 8,712,665 | 43,563,325 |
| 세출 | 국비 보조금 | 2,613,799 | 2,613,799 | 2,613,799 | 2,613,799 | 2,613,799 | 13,068,995 |
| | 시비 보조금 | 3,049,433 | 3,049,433 | 3,049,433 | 3,049,433 | 3,049,433 | 15,247,165 |
| | 구비 보조금 | 3,049,433 | 3,049,433 | 3,049,433 | 3,049,433 | 3,049,433 | 15,247,165 |
| | 소계(b) | 8,712,665 | 8,712,665 | 8,712,665 | 8,712,665 | 8,712,665 | 43,563,325 |
| □ 총 비용(a-b) | | 0 | 0 | 0 | 0 | 0 | 0 |

※ e호조 사업예산구조화 참조

4. 재원조달 방안

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교부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이은경 (☎ 3153-8857)